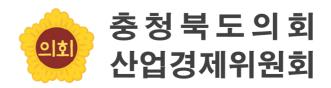
도일이 중심 실뢰받는 의회 2023. 3. 22.(수) 제 4 0 7 회 임 시 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소재·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 소재·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**제 출 자**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3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3. 제안이유

- 가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의 개정사항 (종전 "소재·부품"에서 "소재·부품·장비"로 확대)을 반영하고,
- 나. 충청북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명)
- 나.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·지원계획 체계화(안 제4조)
- 다.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(안 제9조 ~ 안 제13조)
- 라.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등 마련 (안 제14조 ~ 안 제17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현행 조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소재·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19년 9월 23일 제정되었으나,
- 근거법인 「소재・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2019년 12월 31일, '장비산업'이 추가된 「소재・부품・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"소재부품장비산업법")으로 '전부개정'되었으나, 현행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지난 2022년 11월 14일 신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시 기국기 의원으로부터 개정요구를 받았음
- 이에 충청북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등과 육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6개 조항이 증가된 본칙 18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안 제5조는 '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'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 - 현행 조례는 소재·부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, 개정안에는 5년마다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

-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, 이 개정안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
-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'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위원회'에 관하여 규정하였음
 -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, 위원수, 위촉직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으나, 개정안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화하였음
 - 다만,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으로, 부위원장을 담당 과장으로 규정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려는 것은 관주도로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.
 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기술력과 경험 등 민간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간주도가 아닌 관 주도의 위원회 운영은 획일화되고, 경직된 운영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,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
- 안 제7조는 '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'에 관한 사항으로,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1항과 비교 할 때, 안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 등의 사유를 제1호 에서는 강화한 반면, 제3호에서는 완화하였음
 - 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증언, 감정 외에 <u>진술, 자문,</u> 연구,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·기피·회피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

다. 종합의견

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적인 '보이지 않는 기술 속의 기술'로, 산업 안보와 국가 경제 미래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으며, 미래신시장 주도를 위한 기술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핵심 주체로서 이를 더욱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
-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과 위원회 설치 등을 구체화함은 물론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
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 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다만, 현행 조례에서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육성계획으로 개정한 점, 위원회 구성을 '격하'한 점과 위원의 제척・기피・회피 완화 등 <u>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,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편・타당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</u>